

감 사 원

징계요구 및 통보(인사자료)

제 목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부당 개입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조 치 기 관 ① 서울특별시 ② 서울특별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특별시(○본부 □부)는 2014. 12. 30.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A, 이하 “○○개발”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대표이사 B, 이하 “□□”라 한다)¹⁾와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건축, 토목, 조경)”(이하 “어린이병원 증축공사”라 한다) 계약(계약금액 109억 원)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개발 및 □□는 2015. 4. 30.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이하 “△△”라 한다)와 하도급계약²⁾(계약금액 38억 원)을 체결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15. 5. 18. ○○개발 및 □□와 △△ 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승인 통보하였다.

한편 ○○개발은 2015. 1. 15. 무직이었던 D를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의 현장대

1) ○○개발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고 □□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업체인데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입찰공고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 ○○개발은 지역제한기준을 맞추기 위해 □□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도급비율은 ○○개발과 □□가 각각 51%와 49%로 주관사는 ○○개발이며, 계약기간은 2014. 12. 30.~ 2017. 2. 19.임

2) 공사기간은 2015. 5. 1.~2017. 2. 19.이며 하도급률은 82.17%임

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 직원(○○개발 □부 부장)으로 채용한 후 2015. 1. 20. D를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장대리인계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고, D는 2015. 1. 15.부터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준공(2017. 7. 24.) 이후인 2017. 8. 15.까지 계 32개월간 ○○개발의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2. 업무 담당자들의 비위 행위

서울특별시 △담당관실 E은 2013. 3. 15.부터 2016. 3. 15.까지, 서울특별시 ▽구 □과 과장 F은 2014. 7. 25.부터 2015. 1. 11.까지 각각 서울특별시 ○본부 □부 ▹과 위 직 또는 직위에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공사관리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발주 및 기성금 지급 등 관련 업무를 주관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및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0조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에서도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F과 E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계약업체인 ○○개발 등으로 하여금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하게 관여하고 특정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공사 대금을 대납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F의 경우

1) 하도급 업체 선정에 부당 개입

F은 서울특별시 ○본부 □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경(2014. 12. 10.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계약업체 낙찰 공고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G³⁾(△△의 회장으로 실질적 대표)이 서울특별시 ○본부 □부 사무실로 찾아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도급사가 결정된 것을 알고 있으니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담당자를 소개해달라”라고 하자, G에게 E을 소개했다. 이때 F과 E은 G으로부터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F은 2015년 1월 초경(날짜 모름)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구 감리단장)였던 H⁴⁾에게 전화하여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가 행정 처리도 복잡하고 공사 자체도 어려우니 서울시 공사 경험이 많은 업체인 △△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토공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인 ○○개발에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공동도급사였던 □□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가 공사할

3) F은 G에 대해 2014년 초여름경 서울특별시 <구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구청장 I이 “토목업자 인데 잘 부탁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라”며 소개해서 알게 된 사이이고, G이 가끔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인사하러 사무실에 왔었고, 함께 골프를 친 적도 있다고 진술함. E의 진술에 따르면, F과 G은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이라고 G과 서울특별시 다른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함

4) 서울특별시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J)와 2014. 12. 3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H이 선정되었음(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공사현장점검, 각종 보고서 작성,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업무를 대행함)

수 있도록 하겠다⁵⁾고 하는 등 H에게 △△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부탁하였다. F의 부탁을 받은 H은 2015년 3월 경(날짜 모름) ○○개발에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어린이 병원 증축 공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에 하도급을 맡기라고 추천⁶⁾하였다.

이후 ○○개발은 2015년 3월경(날짜 모름)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당초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을 주려던 ▽▽개발(○○개발의 자회사)⁷⁾에는 하도급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시키지 아니하는 대신 △△를 참석시켰으며, 같은 해 4. 30. △△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부하직원을 통해 계약업체에 인척 채용을 요구

F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를 낙찰받은 ○○개발 및 □□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년 12월 말경(날짜 모름) ○○개발이 당시 무직 상태⁸⁾였던 자신의 인척(동서)인 D를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기 위해 부하직원인 E에게 “내가 사람을 한 명 알려줄테니 그 사람으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척인 D의 이름과 경력사항, 전화번호 등이 적힌 이력서를

5) 이번 감사 시 F이 □□ 측의 누구에게 연락하였는지 답변하지 않았으나, 당시 □□의 공사 담당 차장 K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 3월경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의 하도급계약 개찰 전후로 당시 직속 상관인 □□ 상무로부터 “서울시 ○본부에서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의 모회사인 <<개발 임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를 추천하는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6) F의 동서인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 D도 H으로부터 2015년 2월경 수차례 “△△는 서울시에서 추천한 업체이므로 하도급을 줘야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7) ○○개발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입찰 시 ▽▽개발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 4월경 △△로 하도급 업체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변경계획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고, ▽▽개발(○○개발의 자회사)도 2015. 4. 10.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음

8) D는 1998년 강원도 강릉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을 한 뒤에는 현장대리인 경험이 없었고, 2011년부터는 무직 상태였음

주었다.

이에 E은 곧바로 ○○개발 부장 L에게 전화하여 D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D에게 전화해서 D가 현장대리인을 하겠다고 하면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E의 지시를 받은 L⁹⁾은 2015년 1월경(날짜 모름) D에게 전화하여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D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개발은 2015. 1. 15. D를 ○○개발 □부 부장으로 채용한 후 2015. 1. 20. 서울특별시(▷과)에 D를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고, D는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준공(2017. 7. 25.) 후인 2017. 8. 15.까지 계 32개월간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¹⁰⁾하였다.

나. E의 경우

1) 계약업체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 및 특정한 채용 요구

E은 2014. 12. 10.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에 ○○개발 및 □□가 낙찰되자, ○○개발 계약담당 부장 L에게 전화하여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와 계약업체 간 상견례를 하자며 같은 해 12. 24. 서울특별시 ○본부 ▷과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개발 이사 M과 부장 L은 ○○개발이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으로 인해 2014. 12. 24. 당초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이보다 늦은 오후 6시경에 ▷과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던 E은 상견례를 위해 찾아 온 M

9) L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를 시작도 안했는데 발주처의 요구를 바로 거절하면 공사를 시작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

10) D는 ○○개발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32개월간 매월 300여만 원, 계 98,295,160원의 급여를 받았음

과 L에게 “○○개발은 지방에 있는 작은 업체인데 어린이병원 증축공사는 정말 어려운 공사이니 토공이나 철근콘크리트공사는 내가 서울시 공사 잘하는 하도급 업체를 하나 알려줄테니 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된다”면서 △△를 알려주었고 이후에도 L에게 하도급 업체로 △△를 추천하는 연락을 몇 차례 더 하였다.¹¹⁾

이에 ○○개발 부장 L은 2015년 2월경(날짜 모름)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를 준비하면서 E으로부터 △△의 회장 G의 연락처를 받아 G에게 전화하여 “○○개발이 하도급계약 입찰을 하려고 하니 △△에서도 견적서를 제출하라”라고 하였고, 같은 해 3월경(날짜 모름) ○○개발이 실시한 현장설명회에 △△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는 “2항 가 1)”의 내용과 같이 2015년 3월경(날짜 모름)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낙찰받았고, 같은 해 4. 30. ○○개발 및 □□와 △△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은 같은 해 5. 18. ○○개발 및 □□와 △△ 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승인 통보하였다.

한편, E은 2014. 12. 24. ○○개발 이사 M 등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는 병원 공사라서 공사 자체에 난이도가 있어서 현장 민원도 많아 나중엔 안전 별점을 맞을 수도 있으니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유능하고 일 잘하는 메가톤급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12월 말경(날짜 모름) 자신의 상관인 F으로부터 D의 연락처와 이력서를 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하면서 “D에게 전화해서 D가 현장대리인을 하겠다고 하면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라”

11) 현장대리인 D는 2015. 1. 15.과 같은 해 2월경(날짜 모름) 공사현장에서 △△ G 등이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진술하였고 ○○개발 L과 감리단장 H으로부터 G은 △△의 회장인데 △△는 서울특별시에서 하도급을 주라고 지시한 업체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

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개발은 “2항 가 2)”의 내용과 같이 2015. 1. 20. 서울특별시에 D를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다.

2)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공사 대금의 대납을 요구

서울특별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6항에 따라 2015년 5월경(날짜 모름) ○○개발, □□, △△와 함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대금 중 기성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계약업체인 ○○개발과 □□를 거치지 않고 △△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는 ○○개발과 □□로부터 선금금 명목으로 2015. 6. 1. 650,000,000원, 같은 해 9. 9. 200,000,000원 계 8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5. 1.부터 2015. 8. 31.까지의 공사분에 대해 ○○개발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같은 해 8. 13. 및 9. 15. 기성금 지급을 청구¹²⁾하였다. 이에 E은 각 청구받은 날 ◇부(♡과)로 하여금 △△에 기성금 106,903,200원과 126,316,500원을 지급해주도록 요청하였고, ◇부는 같은 해 9. 21. 계 233,219,700원을 지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따르면 기성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12) △△가 ○○개발에 기성금 내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개발은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관리관인 E의 입회 아래 감리단의 기성검사를 거쳐 서울특별시에 기성금을 청구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고 그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2015. 5. 6. 위 규정을 근거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개선을 통한 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 184호)을 마련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최근 1년간 체불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된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가 자재·장비업자들에게 공사 대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여야 했고, 기성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알려 기성금이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는 2015년 9월경 두차례에 걸쳐 선금금 계 850,000,000원¹³⁾을 수령하고도 어린이병원 증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사유로 [별표] “(주)△△가 자재·장비비를 미지급한 업체 명세”와 같이 ◇◇ 등 20개 공사 참여 업체들에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에 사용한 공사 장비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3) △△와의 하도급계약 총액은 3,801,000,000원임

그런데 당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담당이었던 E은 2015년 6월경(날짜 모름)부터 일부 공사 업체 관련자 등으로부터 △△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전화를 직접 받거나 같은 해 8월경(날짜 모름) 현장대리인 D와 책임건설사업 기술자 H으로부터 현장 인부들이 △△로부터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하며 덤프트럭으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을 막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등의 보고를 받아 △△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E은 △△가 2015. 8. 13.과 같은 해 9. 15. 청구한 기성금에 대해 기성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지 않았고 기성금이 자재·장비업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E은 2015년 9월경(날짜 모름) △△ 회장 G에게 전화하여 7~10일 안에 빨리 민원을 해결하라고 구두로만 요청하였다.

더욱이 E은 위와 같은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2015. 9. 3. ○○개발의 L에게 전화하여 “△△가 공사비를 체불한 인부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내고 있으니 ○○개발이 인부들에게 체불금을 빨리 지급하라”라고 하였고, 같은 해 9. 7. L에게 재차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자금 지금 급합니다”라며 △△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 대금을 ○○개발에서 대납하도록 부당하게 계속 요구하는 등 [표]와 같이 ○○개발과 □□의 대금 대납 거부 의사¹⁴⁾에도 “민원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 ○○개발에서 지체상금

14) 당시 E의 대납 지시에 대해 ○○개발과 □□는 E이 대납하라고 지시하는 금액은 이미 ○○개발과 □□가 △△에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니 공사비를 대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기성금의 경우 공사가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가 각 공종마다 장비사용 내역, 자재 투입비용 등을 산출하여 계약업체인 ○○개발에 청구하면 이를 감리단에서 기성검사한 후 발주처인 서울특별시에 청구하므로, 9월 기성금 청구금액에는 착공부터 9월까지의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을 내야하고 별점을 먹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체상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발주처에서 배려해 줄테니 본인을 믿고 일단 얼른 입금을 하라”거나 “형태경국장님께 찍히지 맙시다”라는 등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였다.

[표] E의 공사 대금 대납 관련 요구 내역

구분	일자	대상	연락 수단	요구내용	경위
1	2015. 9. 3.	○○개발 L	휴대 전화	“△△가 공사비를 체불한 인부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내고 있으니 ○○개발이 인부들에게 체불금을 빨리 지급하라”	공사참여자들이 2015년 7월경부터 △△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서울특별시 ○본부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E이 계약업체인 ○○개발 및 □□직원에게 공사대금 대납을 종용함
2	2015년 9월경	□□ K	휴대 전화	“△△가 체불하여 발생한 민원을 빨리 처리하라”	
3	2015. 9. 7.	○○개발 L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자금 지금 급합니다”, “결과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일찍 부탁드립니다”	2015. 9. 3. L이 E에게 공사비 대납은 ○○개발 내부적으로 화의가 필요하고 공동계약업체인 □□와 협의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결정이 되면 알려주겠다고 하자, E이 며칠 후인 9. 7.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며 자금 집행을 요구함
4	2015년 9월경	○○개발 L	휴대 전화	“민원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 ○○개발에서 지체 상금을 내야하고 벌점을 먹을 것이다, 지체상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발주처에서 배려해 줄테니 본인을 믿고 일단 얼른 입금을 하라”	○○개발이 E의 공사대금 대납 지시를 중복 지급이라고 주장하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E이 여러 차례 전화하여 대납하도록 회유함
5	2015. 10. 7.	□□ K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모든 책임은 발주자인 본인이 질테니 세금계산서 받은 것 빨리 지급해주세요”	□□는 △△에 공사 대금을 이미 선금과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대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E은 2015년 10월경(날짜 모름) 서울특별시 ▽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F을 찾아가 □□가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E이 다시 한번 K에게 공사대금 대납을 촉구함
6	2015. 10. 13. 15)	○○개발 L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빠르게 정비해요. 현장 계속 멈추면 손해는 귀사니까? 국장님이 나보고 매일 보고하라 하는데 사태 파악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N국장님께 찍히지 맙시다”	2015. 10. 5.과 같은 달 7. ○○개발과 □□가 공사 대금을 대납한 이후에도 △△의 공사비 체불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자 E이 2015. 10. 11. L에게 직불을 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개발이 지시대로 조치를 하지 않자, E은 서울특별시 담당 국장을 언급하며 ○○개발의 대납을 요구함

자료: ○○개발 L 등의 진술 및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개발과 □□는 △△가 선금금과 기성금 계 1,083,219,700원을 이미 지급받았는데도 [별표] “(주)△△가 자재·장비비를 미지급한 업체 명세”와 같이 2015. 10. 5.와 같은 해 10. 7. ◇◇ 등 20개 업체(○○개발 4개 업체, □□ 16개 업체)

15) E의 요구에 의해 ○○개발 등이 2015. 10. 5. 및 10. 7. 대납을 하게 됨. 그러나 그 뒤에도 △△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E은 ○○개발에 대납 강요를 또 하였음(○○개발은 이에 대해 추가 대납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에 계 339,146,334원¹⁶⁾을 재차 지급하였다.

그 후 ○○개발과 □□는 2016. 6. 8. △△의 자진 포기로 건설공사면허가 말소되자 같은 해 9. 29. △△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개발과 □□는 하도급 없이 직접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의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하였고, 결국 E의 요구대로 △△ 대신 지급하였던 공사 대금 계 339,146,334원을 △△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는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는 등 하도급 부조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① 이 건 관련자 F은 “2항 가 1)”과 관련하여 ○○개발과 □□에 △△에 하도급을 주도록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014. 12. 12. 어린이병원 증축공사를 발주할 당시 ○본부 ▷과에서 G과 △△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은 F뿐이었으며 F은 2014년 여름경 당시 ◁구청장이었던 I으로부터 “토목업자인데 도와줄일이 있으면 도와주라”면서 G을 소개받았고 G과 함께 골프모임에 참석하는 등

16) ○○개발과 □□가 중복 지급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으나 △△가 ○○개발에 제출한 기성내역서에 따르면 △△는 “사토운반”, “바닥면고르기(발파)” 등 기성 공종내역으로 기성금을 수령한 것인데 △△는 사토운반, 발파업체에 2015년 5월 이후 대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개발과 □□가 대납한 것이므로 대납금액과 당초 지급했던 선금, 기성금이 상당부분 중복된 것으로 보임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어린이병원 하도급 공사를 낙찰받고 싶다는 G에게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의 공사관리관인 E를 직접 소개해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리단장 H에게는 직접 △△가 하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F은 △△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은 “2항 가 2)”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자신의 동서인 D를 선임하도록 요구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② E은 “2항 나 1)”과 관련하여 ○○개발에 F의 인척인 D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라고 요구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과 □□로 하여금 △△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한 데 대해서는 F이 2014. 12. 29. ○○개발 M 이사와 L 부장이 공사 관련 서류 보완 때문에 ○본부에 방문한 날 F이 ○○개발에 △△를 추천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를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개발과 □□의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담당이었던 직원 모두가 E의 소개로 △△와 회장 G을 알게 되었고 E의 요구대로 △△에 하도급 공사를 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개발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업체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가 서울특별시와 하는 첫 번째 공사이고 현장대리인 선임 요구건에서 보듯이 E이 ○○개발에 계속 연락을 해온 점, F은 2015년 1월경(날짜 모름) 감리단장 H에게 □□는 본인이 알아서 할테니 ○○개발에 △△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점, ○○개발은 감리단장 H이 F의 부탁을 받고 2015년

3월경(날짜 모름) △△를 하도급 업체로 추천받기 전부터 △△가 서울특별시 추천 업체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E은 “2항 나 2)”와 관련하여 △△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 대금을 ○○개발과 □□가 대납하도록 요구한 것이 부당한 지시였다는 것을 당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체불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개발 및 □□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었고, 발주처의 공사관리관인 E이 계약 상대방인 두 업체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점, 더욱이 △△는 E이 두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한 업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징계요구 양정 하도급 업체가 부담할 공사 대금을 계약업체가 대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E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에 위배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공사관리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업체의 대납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납을 강요하여 결국 계약업체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행위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위 행동강령 등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정직에 해

당하는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난 사항이지만 위 계약업체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해야 하는데도 E은 38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의 하도급 계약을 특정업체에 주도록 하거나 자신의 상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그 밖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하도급 업체가 부담할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E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 따라 징계처분(정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계약업체로 하여금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고, 자신의 인척을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한 □과장 F의 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인사자료)]

[별표]

(주) △△가 자재 · 장비비를 미지급한 업체 명세

(단위: 원)

연번	업체명	거래내용	발생월	금액	입금업체	입금날짜
1	◇◇	토사운반	6, 7, 8월	142,634,800	○○개발(주)	2015. 10. 5.
2	(주)♡♡	발파	7월	4,400,000	○○개발(주)	"
3	(주)♠♠	컴프임대	5월	825,000	○○개발(주)	"
4	♣♣(주)	목재 (토류판)	5, 7, 8월	56,082,851	○○개발(주)	"
5	☆☆건설기계	천공	5월	27,500,000	□□(주)	2015. 10. 7.
6	●●종합중기	06W	6, 7월	11,456,500	□□(주)	"
7	■ ■	10LC	6, 7월	14,822,500	□□(주)	"
8	▲▲ 지게차	지게차	6, 7월	693,000	□□(주)	"
9	▶▶ 중기	06W외부	6월	1,980,000	□□(주)	"
10	▼▼ 중기	02Lc	7월	990,000	□□(주)	"
11	◀◀	축중기	5, 6, 7월	1,870,000	□□(주)	"
12	◀◀	축중기	6, 7월	22,720,925	□□(주)	"
13	◆◆주유소	E/A	6, 7월	36,416,152	□□(주)	"
14	♠♠상사	유류비	7월	2,904,330	□□(주)	"
15	♣♣ 가스 상사	잡자재	6, 7월	754,050	□□(주)	"
16	♥♥시스템	산소외	6, 7월	935,000	□□(주)	"
17	★★철강	철판 등	6월	4,153,226	□□(주)	"
18	⊙⊙ 중기	발전기	7월	1,210,000	□□(주)	"
19	▣▣	발파 계측	7월	6,050,000	□□(주)	"
20	(주)◆◆엔지니어링	대좌	7월	748,000	□□(주)	"
계				339,146,334	-	

주: 굵게 표시한 것은 E이 K에게 업체명을 알려주며 입금하라고 지시한 업체임
 자료: ○○개발 제출자료 재구성